감액처리에 대한 설명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계약자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의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감액전	감액후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500만원
감액시점의 해약환급금	400만원	200만원
감액할 때 지급금액	200만원 (= 400	만원 - 200만원)

제2-8조2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 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 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관련 판정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

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할 경우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 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용, 보험료 변경내용, 특약내용 변경 절 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안내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경시점의 이 특약의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특약의 소멸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 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 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

- 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5조(보험 금 등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제1-6 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액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 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 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 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 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 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계없이 지급금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11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부표1-1>"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2-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중 <mark>증</mark> 난치질환자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	
(중증치매제외)	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	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	
산정특례대상	대상"으로 신규 등록되는 경우 (다	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	
보장급여금	만, 최초 1회에 한함)	생한 경우 "특약보험가입금	
		액의 50%"를 지급함)	

- ※ 1년 미만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이 특약은 그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표2-2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 대상



별첨2 [표 106] 참조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 (무배당, 갱신형)







약 관 목 차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참조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제2-1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제2-1조의3 "중증치매 | 산정특례대상" 및 "중증치매 |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제2-1조의4 보장계약 등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5조 사고증명서

제2-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2-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2-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8조의2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대한 특칙

제2-8조의3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제2-9조 특약의 소멸

제2-9조의2 "특약의 무효"에 대한 특칙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2-11조 해약환급금

제5관 보험금 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2-12조 적용대상

제2-13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

제2-14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2-15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1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6관 기타사항

제2-1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부표2-1] 보험금 지급기준표

[부표2-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치매 | 의 상병

[부표2-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치매Ⅱ의 상병

중증치매 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 (무배당, 갱신형)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

제1편 일반사항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 제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이 특약 "제1편 일반사항" 으로 합니다.

- ※ [특약 약관] "제1편 일반사항"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이 특약은 제2-1조의4(보장계약 등의 정의)에서 정한 총 2개의 보장계약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특약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보장계약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멸된 보 장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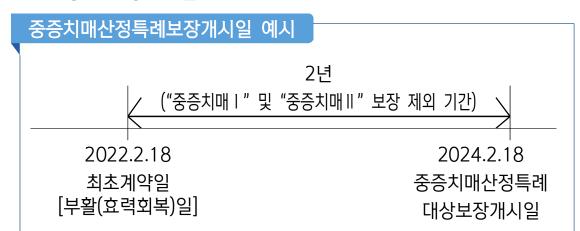
제2편 개별사항

제1관 용어의 정의 등

제2-1조 특약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및 제2-8조의2["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대한 특칙]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증치매산정특례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 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1조의3("중증치매 I 산정특례대상" 및

"중증치매 II 산정특례대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치매 I 산정특례대상" 또는 "중증치매 II 산정특례대상"로 등록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 l 산정특례대상" 또는 "중증치매 ll 산정특례대상"로 등록된 경우 제 2-1조(특약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2-1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년만기 또는 20년만기 갱신으로 하며,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일부터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가 "10년만기의 경우 10년", "20년만기의 경우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제1-9조(특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 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 제1-1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③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다만, 주계약 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하며,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 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이하 같습니다) 만료일 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 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갱신된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 전 특약의 약관을 준용하 며, 갱신시점의 유효한 보장계약을 동시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제2-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각 보장계약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보장계약이 소멸 된 경우 해당 보장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 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 2. 제2-9조(특약의 소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 3.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 ⑦ 갱신계약의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갱신 시점의 나이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 니다.
- ⑧ 회사는 갱신계약의 변경내용 및 보험료 등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 ⑨ 갱신계약의 각 보장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 용됩니다.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산출기초율 :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이율 및 위험률 등

제2-1조의3 "중증치매 ! 산정특례대상" 및 "중증치매 !!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증치매 l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86호, 2024.1.1 시행)」 제5조 별표4의 2(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산정특례등록 신청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 중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치매 시원이다" ○ Ⅰ의 상병」(<부표2-2> 참조)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 은 경우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중증치매 II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4의 2(중 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 중 등록일로부터 매년 최대 60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치매॥의 상병"(<부표2-3> 참조)에 해당하는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 단,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간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 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인정

V810

-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 가 필요한 경우
-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③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산정특례적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산정특례 적용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